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우재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54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우재준의원 대표발의(제2200854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도 교육청 종전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의무 (안 제31조의2제1항)	2

I. 우재준의원 대표발의(제2200854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우재준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4. 6. 24.

다. 회 부 일 : 2024. 6. 2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법률에 의하여 도와 광역시(분리 당시 직할시)가 분리되어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여 후적지의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도교육청이 이전된 경우에 대하여는 국가의 매입 규정이 없어 후적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지장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제기됨. 특히 경북도청 후적지의 경우 최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었는데 도교육청 청사 및 부지의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 원활한 후적지 개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도교육청의 청사 및 부지를 매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고 후적지 개발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3. 검토의견

가. 도 교육청 종전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의무(안 제31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등) ① 「지방자치법」(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직할시의 설치(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u>도청</u>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u>도청</u> 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경우 종전 <u>도의 청사 및 부지</u> 는 국가가 매입한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31조의2(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등) ① ----- ----- ----- ----- ----- <u>도청·도교육청</u> ----- ----- <u>도청·도교육청</u> ----- ----- <u>도의 청사 및 부지</u> (도교육청의 청사 및 부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종전 도교육청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에 관한 적용례 : 개정규정은 법률 제9057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최초로 도교육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것부터 적용

개정안은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로 2008. 9. 29.¹⁾ 이후 도 교육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경우 국가에게 도 교육청의 종전 청사 및 부지를 매입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직할시(「지방자치법」 법률 제4789호 개정에 따라 1995년 1월부터 광역시로 변경) 설치에 따른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로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경우, 도의 종전 청사 및 부지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과 사실상 매각이 곤란한 상황임을 고려²⁾하여 국가가 이를 매입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음(법 제31조의³⁾).

경상북도청 후적지⁴⁾ 내의 도의 종전 청사 및 부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22년에 매입 완료⁵⁾하였으나, 동 후적지에 소재한 도 교육청의 종

1)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9057호) 시행일임.

2) 법률 제12978호 개정이유 참조

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2(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등) ① 「지방자치법」(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직할시의 설치(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의 대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4) 後適地. 건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여 비어있는 땅을 말함.

5) 법 제31조의2에 따라 도의 종전 청사 및 부지를 국가(문화체육관광부)가 매입한 사례는 경상북도청과 충청남도청(2014년)의 두 가지가 있음.

전 청사 및 부지는 “도”의 종전 청사 및 부지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가 매입하지 않았고,⁶⁾ 도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매각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⁷⁾

경상북도청 후적지 일대는 2020년 12월에 대구 도심융합특구⁸⁾⁹⁾로 지정되어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후적지 안의 도 교육청의 종전 청

6) 법제처 유권해석 제18-0391호 (국토교통부 - 도교육청의 청사 및 부지가 도청의 청사 및 부지에 포함되는지 여부(「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2 관련)) 참조

7)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 이전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전비용의 조달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 및 방법

2. 종전부동산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활용방안

② 이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종전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지사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 “이전기관”이란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1호의 공공기관으로서,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도지사와 합의한 기관을 말한다.

8)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융합특구”란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9) 대구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개요는 아래와 같음.



위치·면적: 구 경북도청 부지(14.2만㎡), 삼성창조경제센터(9.1만㎡),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75.1만㎡)

현황: 2020.12. 사업지 선정, 2021.7. 기본계획 수립 착수

구상

[경북도청 부지] ①(산업) 로봇 등 첨단 제조기술 데이터 R&D 센터, ②(문화) 문화예술공간 및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삼성창조경제센터-경북대학교] ①(산업) 문화컨텐츠, 로봇 등 특화 산업 육성/ ②(주거) 청년 기숙사

[경북대학교] ①(산업)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②(교육) 비대면 교육센터 건립

※ 자료: 국토교통부

사 및 부지는 국가 매입의 대상이 아니어서¹⁰⁾ 부지를 유상 매입하여야 하는 대구광역시의 부담이 가중되고 후적지의 통합적이고 신속한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표 1] 경상북도교육청의 종전 청사 및 부지 현황

(단위: m², 백만원)

구 분		소재지	지번	면적	매입대금	소유권자
경상북도 교육청	토지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008	6,019	—	경상북도교육감 ※대구광역시에 무상 대부 중(2021-2026)
			1009-1	953	—	
			1111-4	17,144	9,806	경상북도지사
			1111-7	3	2	
	건물		1111-4	10,198	1,766	경상북도교육감 → 경상북도지사 (2024.3.13.)
	합계			34,317	11,574	

* ‘매입대금’ 은 부동산 취득 시 금액임(공유재산등록대장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개정안에 따라 이전하거나 이전할 도 교육청의 종전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할 경우 경상북도청 후적지 전부를 국가가 매입하게 되어 토지·건물 소유 관계가 단순해진다는 점에서 대구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의 추진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있음.

10) 경상북도에 따르면, 후적지에 도의 종전 청사 및 부지, 도 교육청의 종전 청사 및 부지를 제외하고 국가 소유가 아닌 건물·토지로는 대구광역시 소유 도로(지번 1447, 면적 2,543.1m²), 사유지 도로(지번 1453-10 및 1453-11, 면적 합계 20m²), 스카우트연맹 소유 건물(지번 1111-4, 연면적 670m²)이 있음.

다만, 국토교통부는 도 교육청의 종전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할 경우 경찰청·공기업 그 밖의 전체 이전기관¹¹⁾¹²⁾의 종전부동산 매입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고, 현행법에 따라 도의 종전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한 충청남도 및 경상북도의 교육청의 종전부동산 소유권은 이미 이전된 상황¹³⁾으로 개정 시 국가가 현 소유자로부터 다시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여야 하는 등 혼선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인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 및 충청남도교육청의 종전 청사·부지를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의 종전 청사 및 부지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경우 소급입법으로 교육행정업무 추진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의 의무매입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574

11)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 “이전기관”이란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제1호의 공공기관으로서,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도지사와 합의한 기관을 말한다.
6. “종전부동산”이란 이전기관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12) 2024년 7월 기준 경상북도의 이전기관 110개 중 77개가 이전을 완료하였고, 충청남도의 이전기관 94개 중 91개가 이전을 완료하였음.

13) 충청남도교육청의 종전 청사 및 부지는 대전교육청이 2013년에 매입하여 대전동부교육지원청으로 활용하고 있고, 경상북도교육청의 종전 청사는 경상북도청이 2024년에 매입하여 도청사업소 및 대구시 유관기관이 기입주하여 사용 중임.